

수도회 진출에 대한 청원과 교구장 승인서

본 수도회 장상은 본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른 총평의회 결정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교구에 진출하고자 교구장 주교님께 청원합니다.

총원장(관구장): (서명)

1. 수도회 이름:

2. 수도회 소개와 회헌(별첨 자료):

3. 진출지 주소:

4. 진출 목적:

5. 사도직 활동:

6. 회원의 배치:

7. 재 정

- 1) 수도회는 교구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 2) 수도회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8. 권리와 의무

수도회는 지역교회의 친교와 복음화 활동에 협력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22-23조, 25조 참조).

9. 분원의 신설과 폐쇄

수도회 분원(수도원)의 신설은 교구장 주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도좌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609조 1-2항 참조), 분원의 폐쇄는 교구장과 해당 수도회 장상의 협정으로 이루어진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26조 제1항).

10. 기타

이 밖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도회의 특성과 교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법과 교회 관례에 따른다.

본 교구장은 귀 수도회가 본 교구의 관할 지역에 진출하여 위와 같이 활동할 것을 승인한다(교회법 제608-610조, 제678-683조 참조). 이 승인은 서명일부터 그 효력을 지니며 본 교구장의 후임자에게도 자동 승계된다.

년 월 일

교 구 명:

교 구 장: (서명)

공증관	수도회 사무국장: (서명)	교구 사무처장: (서명)	
-----	----------------	---------------	--

사도직 활동 위탁 계약서

() 교구장은 () 교구 안에서 운영되는 ()을(를) 아래와 같이 () 수교회(선교회)에 위탁하며, () 수교회 총원장(관구장)은 이에 동의한다.

1. 수교회 이름:

2. 위탁 사도직 활동 개요

- (1) 위탁 사도직 활동의 목적:
- (2) 위탁 사도직 활동의 범위:
- (3) 위탁 사도직 활동의 내용:
- (4) 위탁 기관의 이름과 주소:
- (5) 회원의 배치:

3. 재 정

수교회는 수탁 기관의 재정에 관하여 교구와 따로 협의한다.

4. 인 사

위탁 기관 파견 수도자들의 임기 등 인사 문제는 수교회의 규정을 존중하여 수교회 관할 장상과 교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5. 권리와 의무

수도자들(선교사들)은 수탁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의 지도를 따르며, 소속 수교회의 규율도 충실히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678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22-23조, 25조 참조). 교구장 주교는 위탁사도직 활동 이외의 수도생활에 있어서 수교회(선교회)의 정당한 자치를 보존하고 보호한다(교회법 제586조).

6. 계약의 효력

- 1) 이 계약은 교구장 주교와 수교회 장상의 서명일부터 효력을 지니며 그 후임자에게도 자동 승계된다.
- 2)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양측 계약자에게서 아무런 이의가 제시되지 않으면 3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 만료 이전에도 쌍방의 합의를 거쳐서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수 도 회 명:

교 구 명:

총원장(관구장):

(서명) 교 구 장:

(서명)

공증관

수교회 사무국장:

(서명)

교구 사무처장:

(서명)

사목구 파견 계약서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돕기 위한 수도자 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교회법 제681조 1-2항).

1. 본당 사목구 이름:
2. 수도회와 수도회 분원(수도원) 이름:
3. 주소:
4. 사목구 활동 분야:
5. 회원의 배치:

6. 권리와 의무

- 1) 파견된 수도자는 그들이 속한 수도회 은사에 따라 교구의 복음화에 적극 협력하며 교구장 주교와 사목구 주임사제에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2조 1항 참조).
- 2) 사목구 주임사제는 파견된 수도자의 소속 수도회 회헌과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영성 생활과 공동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수도생활의 증진과 쇄신을 위한 연중 피정과 연수, 재수련, 휴가와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29조, 제30조 2항 참조).
- 3) 사목구 주임사제는 파견된 수도자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30조 1항 참조).
- 4) 사목구 주임사제는 수도자를 본당 사목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게 하되, 회계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인 사

수도자의 정규 인사는 수도회 장상의 자율권을 존중하며 예외적인 인사는 수도회 장상이 사목구 주임 사제와 협의하여 정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6조 2항 참조).

8. 계약의 효력

- 1) 이 계약은 교구장 주교와 수도회 장상의 서명일부터 효력을 지니며 그 후임자에게도 자동 승계된다.
- 2)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양측 계약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시되지 않으면 3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 만료 이전에도 쌍방의 합의를 거쳐서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수 도 회 명:

교 구 명:

총원장(관구장):

(서명)

교 구 장:

(서명)

공증관

수도회 사무국장:

(서명)

교구 사무처장:

(서명)

수도회 분원(수도원) 설립 동의서

본 교구장은 본 교구의 관할 지역에 귀 수도회의 분원(수도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설립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수도회 이름:

2. 분원 이름:

3. 주소:

4. 분원 설립 목적

1) 일반 목적: 수도회 설립 정신과 고유한 카리스마에 맞는 생활과 활동

2)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사도직 활동을 열거한다.)

-
-

5. 회원의 배치: 분원이 교구로부터 기관을 수탁할 경우 거기에 배치될 인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수도회 관할 장상이 교구장 주교와 협의한다(교회법 제616조 참조). 다만 분원 내부생활에 필요한 인원의 배치는 수도회 장상이 한다.

6. 사도직의 위탁: 교구장이 사도직 활동을 위탁할 경우, 그에 관하여는 교구장과 수도회 장상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7. 분원은 교구장 주교의 사목지침을 존중하며 지역교회와의 친교와 유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8. 분원의 폐쇄: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회 분원(수도원)을 폐쇄할 때에는 수도회 관할 권자가 교구장과 의논하여 한다(교회법 제616조 1항 참조).

9. 분원 설립 목적의 변경: 분원 설립 목적이 변경될 때에는 교구장으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612조 참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6조 1항).

년 월 일

교 구 명: _____

교 구 장: _____(서명)

공증관(교구 사무처장): _____ (서명)